
201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 모집요강

2016. 04

2017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기타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지원서류 제출	2016.07.04(월) ~ 07.08(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본교 본관1층)	
지원자격 심사	2016.08.08(월) ~ 08.12(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입학지원서 접수	2016.09.12(월) ~ 09.21(수) 09:00 ~ 17:00	입학관리팀	평일 본교 방문접수
진 형 (면접고사)	2016.09.29(목) 14:00	입학관리팀	면접고사 시간준수
합격자 발표	2016.11.15(화) 14:00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www.cju.ac.kr
예치금 등록	2016.12.19(월) ~ 12.21(수) 09:00 ~ 17:00	경 리 팀 (본교 본관1층)	
최종 등록	2017.02.03(금) ~ 02.06(월) 09:00 ~ 17:00	경 리 팀 (본교 본관1층)	

※ 입학서류 및 입학지원서 제출시 유의 사항

1.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위 일정에 적용받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기간 평일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팀을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3.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입학서류 및 입학지원서 제출 시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합니다.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2017학년도 정원 조정에 따라 학과, 학부(전공) 명칭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경상대학	인문	경영학과	100	10 이내
		회계학과	57	5 이내
		경제학과	45	4 이내
		무역학과	50	5 이내
		관광경영학과	75	7 이내
		호텔경영학과	50	5 이내
		중국통상학과	40	4 이내
사회과학대학	인문	법학과	70	7 이내
		행정학과	55	5 이내
		지적학과	35	3 이내
		정치안보국제학과	24	2 이내
		사회복지학과	45	4 이내
		신문방송학과	60	6 이내
		광고홍보학과	55	5 이내
		사회학과	20	2 이내
인문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교직)	30	3 이내
		역사문화학과(교직)	35	3 이내
		문헌정보학과(교직)	40	4 이내
		문화콘텐츠학과	40	4 이내
		영어영문학과(교직)	60	6 이내
		일어일문학과(교직)	28	2 이내
		중어중문학과(교직)	27	2 이내
이공대학	자연	응용화학학과	39	3 이내
		생명과학과	36	3 이내
		바이오메디컬학과	40	4 이내
		통계학과	40	4 이내
		토목공학과	45	4 이내
		환경조경학과	45	4 이내
		환경공학과	45	4 이내
		건축공학과	43	4 이내
		건축학과(5년제)	39	3 이내
		전자공학과	85	8 이내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이공대학	자연	반도체공학과		70	7 이내
		컴퓨터정보공학과		50	5 이내
		산업공학과		28	2 이내
		레이저광정보공학과		57	5 이내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0	3 이내
		태양광에너지공학과		40	4 이내
		제약공학과		40	4 이내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8	-
	자연	수학교육과		38	-
예술대학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40	4 이내
		시각디자인학과		45	4 이내
		공예디자인학과		40	4 이내
		패션디자인학과		28	2 이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40	4 이내
		연극학과		28	2 이내
		영화학과		40	4 이내
		비주얼아트학과		20	2 이내
		음악학과		35	-
		체육학과		40	-
보건의료대학	자연	간호학과		95	-
		치위생학과		40	-
		방사선학과		30	-
		물리치료학과		40	-
		작업치료학과		35	-
		임상병리학과		40	-
	인문	의료경영학과		35	3 이내
	자연	스포츠의학과		36	3 이내
직할학부군	인문	군사학부	군사학과	45	-
		자연	항공학부	항공운항학과	30
	항공기계공학과			35	3 이내
합계				2,706	54

- ① 전체 입학정원 2,706명의 2%의 54명 선발하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단,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함.
- ②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입학정원에 제한없이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1-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일 시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자 (공무원, 상사 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통일부 확인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은 자율 설정

●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1-2.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 원 자 격	비고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 주요 해설

●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호자 등의 조건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2-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구분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나. TOEIC 650, TOEFL(PBT 550,CBT 210,iBT 80), TEPS 550, IELTS 5.5 이상 소지자 다.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3급 수준)에 통과한 자 라.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자 마. 일부과정(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의 경우 기준완화 가능	예.체능계열은 완화

☞ 주요 해설

● 전교육과정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대학별 확인).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구분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나. TOEIC 650, TOEFL(PBT 550,CBT 210,iBT 80), TEPS 550, IELTS 5.5 이상 소지자 다.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3급 수준)에 통과한 자 라.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자 마. 일부과정(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의 경우 기준완화 가능	예.체능계열은 완화

☞ 주요 해설

●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국적자 제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초·중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3.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4. 제출서류

● 공통 사항

- ①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류 발행기관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출서류상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 제출서류 중 공인기관의 공증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영사)관의 공증을 권장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영주교포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⑤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⑥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⑦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보호자, 학생)	각1부
해외 파견 근무 재외국민 · 기타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혹은 호(제)적 등본 ⑥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⑦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학생) ⑧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⑨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법인) ⑩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각1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⑤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각1부
전교육 과정 이수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각1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전가족 호적등본 ⑤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시민권사본, 학생 여권사본)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⑦ 재정정보증서류 ⑧ 최종학력인증서	각1부
전교육 과정 이수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⑤ 전가족 호적등본 ⑥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⑧ 재정정보증서류	각1부
북한이탈 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	각1부

5.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평가요소 및 배점

구분	모집단위	선발모형	사정비율	전형요소(%)						
				국어	영어	수학	면접구술	서류전형	실기	기타 (세부명)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정원 2%이내)	전모집단위(보건의료대학, 사범대학, 군사학과 제외)	일괄합산	100				100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제외	
			100				100		연극학과 영화학과	
			100				100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 비주얼아트학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제외	
	100				100		연극학과 영화학과			
북한이탈주민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 비주얼아트학과		

나. 평가 및 선발 방법

- ① 면접고사는 언어구사 능력, 지원전공 이해력, 학업수학 능력,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 평가 등 4개 평가 항목을 직접대면 구술에 의한 수학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함.(단,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간단한 실기 테스트 병행)
- ② 입학성적 총점의 60%(60점)미만을 취득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③ 모집인원은 총 54명으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총점 순에 의하여 선발함. 단, 전 모집단위 지원자가 전체 모집인원(54명)을 넘을 경우 각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총점 순에 의해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54명을 선발함.
- ④ 모집정원에 제한 없는 정원외에 해당하는 지원자(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는 입학성적 총점이 60%(60점) 이상일 경우 전원 선발함.
- ⑤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6. 전형료

원서대 : 없음

전형료 : 70,000원(「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별도 모집요강 참조)

7. 지원자 유의사항

- ① 지원 서류가 미비 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②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연락사항 발생 시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락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③ 접수된 서류는 지원 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④ 면접고사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출서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와 지원 자격 미달자는 입학 후에도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8. 문의 및 상담

- 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문의 및 상담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전화 (043)229-8814

FAX(043)229-8944

주소 우편번호 363-764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문의 및 상담

입학처 입학관리팀 : 전화 (043)229-8033,8034

FAX(043)229-8037

주소 우편번호 363-764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홈페이지 : <http://www.cju.ac.kr>

9. 지원서 및 관련서류 출력 안내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재외국민·외국인 모집 → 서식파일(첨부서류)